

「광주복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」 리빙랩프로젝트 사업비 세부 관리기준

2023. 3.



목 차

I. 사업비 집행기준	1
II. 유의 사항	4
III. 제제 조항	6
IV. 지급 기준	7

「광주복구 대학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」 사업비 집행기준

비목		기 준
재 료 비	기 준	<p>사업계획서상의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 유무형의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</p> <p>※ 재료는 시제품의 부속품 또는 가공(화학적·물리적 작용을 통해)되어 시제품의 일부가 되는 재료를 의미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구매하고자 하는 재료가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 연관성이 있어야 함 • 협약기간 내에 납품 및 사용이 가능한 재료비에 한해 집행 가능 •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입에 소요되는 배송비 집행 가능
	유 의 사 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제품양산에 사용되는 재료비 사용 불가 ※ 귀금속, 보석, 원석 등은 원칙적으로 구매 불가하나, 시제품의 일부가 되어 재료 자체로서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및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 시 필요연관성이 높은 경우 주관기관의 판단 하에 예외적으로 구매가능 ※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매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, 주관기관에서 사업비 집행을 제한할 수 있음 ※ 국외 기업과의 구매 거래 시 관세는 동 사업비로 집행 불가 ※ 해외업체와 거래 시, 인보이스(invoice), 수입신고필증, 외국환거래계산서, 계약서, 검수조서(증빙사진 포함) 등 ※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입에 소요되는 배송비 집행 가능
외 주 용 역 비	기 준	<p>선정기업(팀)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,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·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, 재료비 기준, 유의사항 준용 • 외부 전문업체(외주용역업체)는 1년 이상의 해당분야 종사경력, 외주용역대상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의 제작경험 보유 필요 • 계약일 최소 1주일 전 주관기관으로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제출해야 함 • 외주용역비는 수행완료 후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, 예외적으로 분할지급(선급금, 잔금)으로 집행 가능. 선급금 집행 시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
	유 의 사 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외주용역 결과물이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는 경우 사업비 집행 불가 ※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50%를 초과하여 집행 불가 ※ 외주용역의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·종목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 불가 ※ 1년 이하 업력의 업체와 외주용역 계약 체결 시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주관기관은 아이템과의 연관성, 과업수행 가능성, 보유역량, 용역비용, 과업수행기간 적정성 등을 검토 ※ 당해연도 동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간 거래, 창업기업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과의 외주용역 거래가 불가함이 원칙 ※ 선정기업(팀)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, 손해배상금, 지체상금 등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하며 창업기업에서 부담해야 함 ※ 양산 목적의 금형제작비는 집행 불가

비목		기준
특허권 / 무형자산취득비	기준	<p>사업계획서 상의 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집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아이템 사업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재산권, 특허, S/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·등록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집행 가능 협약 체결 이후 출원한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선행기술조사비, 우선심사청구비 집행 가능 출원인(최종권리권자)은 창업기업 본인(법인은 창업자 본인이 대표일 경우 법인명의로 출원)이어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단, 타인 또는 타기관 등과의 협약에 의거 공동 출원을 해야 할 경우 출원 및 등록 비용은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담
	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협약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비용 집행 불가 ※ 협약 이전 출원 건에 대한 등록비용 집행 가능(단, 대리인 성공보수로 집행 불가) ※ 협약종료 이후,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) 관련 출원사실증명원 제출 필요
지급수수료	기준	<p>사업화를 위해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</p> <p>1) 기술이전비 : 선정기업(팀) 시제품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의 이전,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</p> <p>2)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: 선정기업(팀) 재직 임직원들(구성원들)의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(등록비) 집행 가능. 단,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학회, 세미나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 가능</p> <p>3) 전시회(박람회)참가비 :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·외 전시회 참가 시 참가등록비,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, 통역비 등에 한하여 집행. 단,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전시회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 가능</p> <p>4) 시험·인증비 :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·시스템·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집행</p> <p>5) 멘토링비 : 사업화지원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 및 멘토링을 지원받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* 12만 5천원을 초과하는 멘토비 집행 시 기타 소득세(8.8%) 공제 후 집행</p> <p>6) 기자재임차비 : 사업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기, 장비, 부수 기자재, 서버 등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* 주관기관, 대학, 연구소 등에서 기자재 임차 시 해당기관의 내부기준단가 적용</p>
	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기술이전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기술이전비 집행 시 기술이전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 ③ 법인기업은 법인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원칙 ④ 기술이전 금액산출을 위한 평가비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 ※ 시험인증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제품 인증의 경우 시험분석비용과 인증비용 및 컨설팅 비용에 한하여 집행 가능 ② 시스템 인증의 경우 인증심사 및 등록비용에 한하여 집행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시스템 인증의 갱신과 관련된 비용은 집행 불가 ③ 협약 종료일 이후 인증서가 발급되는 인증 건은 사업비 집행 불가 ※ 멘토링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선정기업(팀) 소속 인력에게 집행 불가 ② 멘토링비는 멘토 1인당 1일 50만원 초과 불가

비목		기 준
		※ 기자재임차비 ① 차량(승용차, 화물차, 이륜자동차 등) 등의 임차 경비는 집행 불가 ② 기자재 임차비는 협약기간 이내의 월 납부 금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
교육 훈련 비	기준	선정기업(팀) 소속 임직원(구성원)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·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• 대표 및 창업기업에 소속되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직원에 한함
	유의사항	※ 사업비 지급 신청 시 임직원 재직 확인을 위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제출 ※ 고용노동부 등의 교육비 환급과정 교육 참가 시 환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지급 가능 ※ 고용노동부 등이 주관하는 교육의 '본인부담금'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
광고 선전 비	기준	제품 또는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, 홍보물 제작, 포장디자인, 포털사이트 배너광고,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• 광고 선전을 위해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, 외주용역비 기준, 유의사항 준용
	유의사항	※ 웹 호스팅비, 도메인 등록비 등의 소요비용은 협약기간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 ※ 일회성 무작위 홍보를 위한 배포용 기념품제작(부채, 샘플화장품 등), 유니폼제작, 기프티콘 등에 소요되는 비용집행 불가 ※ 명함 집행 불가

「광주복구 대학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」

사업비 집행 유의 사항

1. 사업비 집행 기간

구분	내용
사업비 집행 가능 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협약기간 이내의 지출원인 행위에 대해 사업비 집행가능 * 지출 원인행위 : 협약기간 내 구매, 계약 등에 따른 결과물(보고서 등)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고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신 • 협약기간 중 지출 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집행 가능 • 서버 임차, 쇼핑몰 입점 등의 구매(이용)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협약기간 이내 구매(이용)건에 대해서만 사업비 집행 가능

2. 사업비 집행

구분	내용	
유의 사항	사업비 사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비의 지출은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, 다른 용도의 사용은 불가 • 한 비목에 총 사업비의 40%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
	사업비 집행거부	• 사업비 집행 대상 기업(거래기업)이 선정기업(팀)의 거래내역과 관련이 없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담당자로부터 사업비 집행거부 가능
	거래기업 확인	• 선정기업(팀)의 사업비 집행 요청 건에 대한 거래처 등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담당자가 거래처 현장방문을 통해 해당내용 확인가능
	사후 환급금 집행 불인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비 집행 시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집행 불가 * 단, 기관 또는 기업의 유형에 따라 관련 법규 등에서 부가세 및 관세 등의 사후 환급 신청이 불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

3.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

구분	내용
요청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선정기업(팀)은 사업계획 또는 예산집행계획 변경 발생 시, 주관기관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• 제출서류: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, 수정사업계획서 • 수정사업계획서 작성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계획 변경 시 : 추가 및 변경된 내역을 다른 색으로 표기 · 예산집행계획 변경 시 : 변경 전, 후 예산집행계획 작성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예산집행계획의 변경은 비목 간 변경금액이 20% 초과할 경우 해당한다. • 사업계획 또는 예산집행계획의 변경은 협약기간 내 1회, 협약종료일 1개월 전 까지 변경 가능하며, 주관기관의 최종 변경 승인 통보 전까지 선정기업(팀)의 예산집행은 중단된다.

4. 사업비 지급제한 및 환수

구분	내용
지급불가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기업(팀)이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선정기업(팀)의 직계존비속, 형제, 자매, 배우자 대표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 및 재직 중인 기업의 임직원 당해연도 동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
타 지원 사업의 사업비 지급불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교육, 컨설팅, 인증 및 기타 지원을 받는 경우, 선정기업(팀)은 본 사업비를 해당 지원사업의 개인부담금으로 지급할 수 없음
사업비 환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사업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주관기관에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관기관이 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5. 사업 성과물의 활용

: 선정기업(팀)은 연구보고서 발행, 사업화 성과의 간행물 게재,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사업 수행 결과물을 대외 발표 시 전남대학교 지역공헌센터의 '리빙랩프로젝트' 지원사업에 의한 사업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.

- 주 최: 전남대학교, 광주광역시북구
- 주 관: 전남대학교 지역공헌센터
- 진 행: 선정기업(팀)
- 문구삽입: 이 결과물은 광주북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'리빙랩프로젝트' 사업비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.

6. 최종 결과보고

: 선정기업(팀)은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과제 수행 실적(증빙사진 포함) 및 사업비 집행 내역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, 주관기관이 관련 자료 요청 시,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- 최종 결과보고 제출기한: 협약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

선정기업(팀) 제재 조항

제재 및 환수 사유	제재 및 환수기준		비고
	참여제한	사업비 환수	
<input type="checkbox"/>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,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	5년	전액 환수	-
<input type="checkbox"/> 보고서 또는 사업결과물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·제출한 경우 *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	3년		
<input type="checkbox"/>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·유사한 제출 자료(사업계획서 포함)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			일시중단
<input type="checkbox"/>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,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* *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사업비 사용가능			
<input type="checkbox"/> 협약기간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국세·지방세 체납 등으로 규제중인 경우			
<input type="checkbox"/>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			
○ 고의성이 있는 경우	1년	전액환수	-
○ 고의성이 없는 경우		잔액환수	
<input type="checkbox"/>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	1년	전액환수	-
<input type="checkbox"/> 주관기관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	3년	전액환수	
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			별도제재
<input type="checkbox"/>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	1년	전액환수	-
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계획 미 이행 및 휴·폐업한 경우	1년	전액 환수	-
○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			
○ 정당한 사유 없이 휴·폐업한 경우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경우			
○ 대표자의 사망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휴·폐업한 경우		잔액 환수	-
○ 질병 등 국가 재난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중단·포기·실패가 발생하는 경우			
○ 기타 선정기업(팀)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정당한 사유 없이 주관기관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			경고
<input type="checkbox"/>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주 이상 지체하는 경우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주관기관의 서류제출 및 프로그램 참석요청에 불응하는 경우			
<input type="checkbox"/>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대응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			
<input type="checkbox"/> 협약기간 내 사업비의 복원 요청에 2주 이상 불응한 경우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각종 보고서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			주의
<input type="checkbox"/> 선정기업(팀) 대표자가 2주 이상 연락 두절인 경우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단순 착오,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지원금을 핵심수행과제 해결 외로 집행한 경우			
○ 협약기간 이내인 경우		해당금액 반납 및 적정용도로 집행가능	개선요청
○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에 확인된 경우		해당금액 환수	개선요청

* 협약기간 내 제재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'중단', 협약기간 종료 후 제재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'실패' 처리
 *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 * 선정기업(팀) 대표자가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사업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
 * 주의 2회 = 경고 1회(협약기한 내)
 * 정해진 기간 내 사업지원금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, 채권추심 진행
 * 상기 항목 중,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, 최대 7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

【지금 기준】

구분	적용기준	편성단가	비고
■ 플래카드			30m이상은 견적가
- 대형	20~30m	350,000원	
- 중형	10~20m	250,000원	
- 소형	10m미만	100,000원	
■ 멘토링비			일일 최대 50만원
- 일반(I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◦ 연구소 연구원 	230,000원	최초1시간
		120,000원	초과1시간(매시간)
- 일반(II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전·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◦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직원 	120,000원	최초1시간
		100,000원	초과1시간(매시간)
- 그 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일반 I 과 II에 해당하지 않는 자 	80,000원	최초1시간
		50,000원	초과1시간(매시간)